2023년 삼기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I 감사개요

O 감 사 기 간 : 2023. 5. 9. ~ 5. 11. (3일간)

O 감 사 범 위 : 2020. 8. 1. ~ 2023. 3. 31.

O 감 사 반 : 청렴감사계장 등 4명

O 감 사 중 점

▶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 산업, 주민자치 분야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

▶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Ⅱ 지적사항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8 건	시정 3건 주의 5건	추징 1건 회수 1건 징구 1건	훈계 ■ 주의 ■
1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부적정	주의		훈계 ●
2	회계관계공무원(지출원) 부재 시 대직 승인 미이행	주의		
3	조경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	시정	징구 (OOO)	주의 ● (병합)
4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주의		
5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부적정	주의		주의 ● (병합)
6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주의		
7	기간제근로자에 따른 4대보험 징수 소홀	시정	추징 (OOO)	
8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OOO)	

지적사항 요약

 ΠI

1.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부적정

-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장비 지원 및 순찰차량 유류대, 초소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범죄예방캠페인 및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우리시는 중앙동 등 29개 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피복비, 야식비, 차량유류비를 일반보상금에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자율방범대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회계 집행 관리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 관련 안내 지침」을 행정지원과-9188(2017.4.1.), 행정지원과-2146(2018.1.22.) 공문을 통해 읍면동에 시달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 안내 지침」에서는 피복비 지출 확인 서류에 피복지급 대상자 명단(서명) 또는 수령증, 피복사진, 지출 영수증을 첨부 하도록 하였음에도,
 - 사기면에서는 야간 청소년 선도활동 및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활동 지원 등 지역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비를 교부 및 정산 업무를 추진하면서 2020 ~ 2021년도
 ●●● 지출에 따른 증빙 사진을 2020년, 2021년 동일 사진으로 첨부 하였고, 지급대상자 명단이 중복되었음에도 아무런 지적 없이 정산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회계관계공무원(지출원) 부재시 대직 승인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대리공무원이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삼기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 지출원의 연가, 대체휴무, 관외출장 등에 따른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하고 세 출예산을 집행했어야 했으나.
 - 이번 삼기면에 대한 감사기간(2023.5.9.~5.11) 중 지출원 부재 시지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출원이 특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에도 대리지정 없이 부재중인 지출원의 권한으로 총 ▲▲건, ○○○원의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3. 조경공사 하지보수보증금 미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 담보책임),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공종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 이하로 내도록 하여야 하고, 철도, 댐 등 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는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나 조경공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사감기면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나 도급자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시정 없이 공사를 준공하는 등 조경공사 하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 「2022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bigcirc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진단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해야 하며,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2주간의 의견청취를 받고,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화 통보서 를 송달하여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 ▶ 삼기면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일이 도래한 ■■■에 대해 <u>재판정</u> <u>통보기준일(재판정 기한일 3개월 前)보다 4일까지 지연하여 안내</u>하였고, 재판정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u>'장애인등급</u> <u>재판정 촉구' 대상자 4명에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까지 지연하여</u> 재판정 촉구를 통지한 사실이 있음

5.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부적정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65조(임금)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제로 하며,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삼기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임금을 매월 지급하였어야 하나, 4 ~ 6개월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 없이 계약 종료시 임금 일괄 지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을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제4항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다음 각 호는 아래와 같음.

-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 2.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3.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 4.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 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인감증명서 수령인이 본인일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통해 서명을 받을 수 있으나, 위임을 통한 대리 발급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어야 했음에도,
 - ▶ 삼기면에서는 ●●● 외 13건의 <u>인감증명 위임발급 시 인감증명서</u> <u>발급대장에 대리인 무인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u>급한 사실이 있음

7. 기간제근로자에 따른 4대보험 징수 소홀

- 「국민건강보험법」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 정수)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 납부)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당시 보수월액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퇴직 시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당초 산정 징수한 보수월액 보험료의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실제 납부한 금액과 신고 시 산정된 보수월액에 차액이 발생 했을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해당자에게 환급하여야 하고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
 - ▶ 그러나 삼기면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2022. 5월분 급여 지급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 처리 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요율로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액을 산정하여 공제하고 차액이 발생할 시에는 정산작업을 거쳐 적정 공제해야 함에도 40,355원을 과소공제 처리 하였는데도 해당 자에게 징수조치 하지 않고 자체 예산(익산시)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8.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제2항 및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지급대상 농지 자격검증 시 확인되는, 농어촌공사로부터 확인한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된 농지의 부적합 안내 결과와 더불어 기본 직불 등록한 농지 중 새올행정시스템에 농지의 전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농지를 등록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시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농지전용 여부 검증 결과와 함께 새올행정시스템의 농지 전용 현황을 확인하여 농지전용 면적을 제외하고 지급했어야 함에도, 삼기면에서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면서 농지전용이 신고된 농지의 전용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